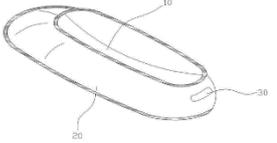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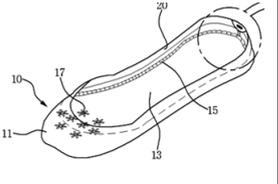


사건번호	2021허5310	사건명	등록무효(디)
심판번호	2020당557	심판결과	기각
원고	심판청구인	피고	피심판청구인
권리유형	디자인	권리명칭	덧버선 디자인
선고일	2022. 6. 29.	선고결과	인용

##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 2에 선행디자인 1, 3을 결합하여 창작이 용이하므로 등록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 ● 사건 개요

원고는 2020. 2. 19. 피고를 상대로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 1과 전체적 심미감이 유사하여 신규성이 없고, 선행디자인 1의 지배적 특징에 선행디자인 2의 바닥부, 발가락부, 측면부 패턴을 결합하여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이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원고의 심판청구를 2020당557호로 심리하여, 2021. 9. 27.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 1과 지배적 특징이 상이하며 선행디자인 1에 선행디자인 2를 결합하여 쉽게 창작할 수 없는 디자인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등록디자인	선행디자인 1	선행디자인 2	선행디자인 3
			

### ● 판시 요지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들이 속하는 덧버선, 덧신류의 경우 덧버선의 측면부는 전면부(발가락부)와 함께 제품을 착용하였을 때 바로 눈에 띄는 부분으로서 대상물품과 관련하여 전체 디자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심미감이나 착용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보는 사람의 주의를 끌기 쉽고 눈에 잘 보이는 지배적인 특징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반면, 뒤꿈치부나 바닥면은 대상물품인 덧신류의 거래나 사용할 때 별다른 이목을 끌기 어려워 지배적인 특징을 형성한다고 볼 수 없다.

페이크 삭스 형태의 덧신의 경우 바닥면을 형성하는 하부 원단(바닥면)과 발을 감싸는 상부 원단(발가락부, 측면부, 뒤꿈치부)으로 구성되고 신을 신었을 때 보이지 않게 하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각 부분의 구성이나 전체적인 형상은 어느 정도 공통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덧신에 관한 디자인 창작의 요체는 지배적인 특징을 형성하는 상부 원단, 특히 발가락부와 측면부 원단의 모양(무늬) 및 색상, 이들의 결합 형태(봉제선의 유무 등), 발삽입구 테두리의 형상(착용 시 덧신과 발의 경계를 이루며 발과 어울려 독특한 심미감을 줄 수 있다) 등의 선택 및 새로운 조합을 통해 독특한 미감적 가치를 나타내는가에 있다고 할 것이다.

선행디자인 2에는 '발 삽입구의 둘레를 따라 얇고 긴 띠 모양으로 형성된 밴드'의 형상이 그대로 개시되어 있는바, 그 밴드의 재질을 선행디자인 1이 뒤꿈치부에 사용하는 내용을 개시하고 있는 '실리콘 밴드'로 대체하고, 선행디자인 3과 같이 발삽입구 테두리 전체에 적용하도록 하는 것은 그 디자인 분야의 일반적 경향에 비추어 볼 때 통상의 디자이너가 특별한 어려움 없이 시도할 수 있는 흔한 창작수법에 의한 변형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뒤꿈치부나 바닥면은 덧신의 구매나 착용 시 별다른 이목을 끌기 어려워 지배적인 특징을 형성하

기 어렵다. 또한, 뒤꿈치부의 봉제선 유무는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하게 사용되는 제조기법 등에 의해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2는 그 바닥면의 모양이 상이하나, 등록디자인의 미끄럼 방지부를 이루는 영문자 및 사각형과 그 배치 형태는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 변형에 그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등록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 2에 선행디자인 1, 3을 결합하여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서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이 정하는 사유가 있어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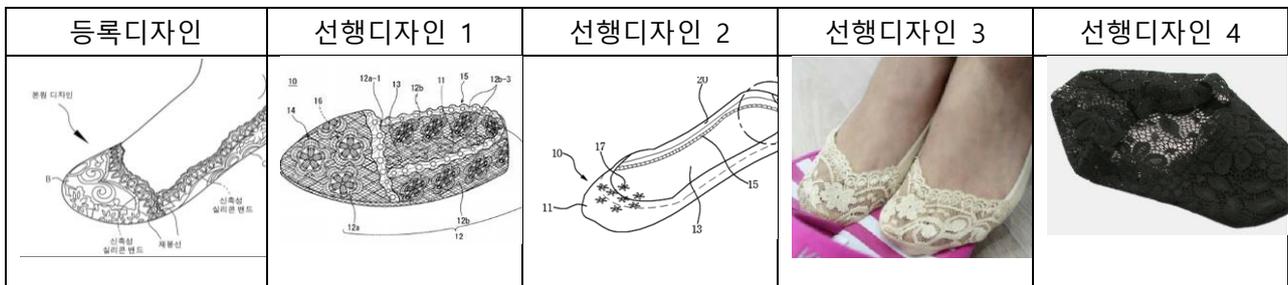
**키워드:** 디자인, 등록무효, 창작용이, 덧버선, 덧신

사건번호	2021허5020	사건명	등록무효(디)
심판번호	2020당556	심판결과	기각
원고	심판청구인	피고	피심판청구인
권리유형	디자인	권리명칭	덧버선 디자인
선고일	2022. 6. 29.	선고결과	기각

###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들로부터 창작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등록 무효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

#### ● 사건 개요

원고는 2020. 2. 19. 피고를 상대로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 1과 전체적 심미감이 유사하거나, 선행디자인 1의 지배적 특징에 선행디자인 2의 바닥부, 발가락부, 측면부 패턴을 결합하여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이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원고의 심판청구를 2020당556호로 심리하여,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 1과 지배적 특징이 상이하며 선행디자인 1에 선행디자인 2를 결합하여 쉽게 창작할 수 없는 디자인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 ● 판시 요지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들이 속하는 덧버선, 덧신류의 경우 덧버선의 측면부는 전면부(발가락부)와 함께 제품을 착용하였을 때 바로 눈에 띄는 부분으로서 대상물품과 관련하여 전체 디자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심미감이나 착용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보는 사람의 주의를 끌기 쉽고 눈에 잘 보이는 지배적인 특징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반면, 뒤꿈치부나 바닥면은 대상물품인 덧신류의 거래나 사용할 때 별다른 이목을 끌기 어려워 지배적인 특징을 형성한다고 볼 수 없다.

페이크 삭스 형태의 덧신의 경우 바닥면을 형성하는 하부 원단(바닥면)과 발을 감싸는 상부 원단(발가락부, 측면부, 뒤꿈치부)으로 구성되고 신을 신었을 때 보이지 않게 하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각 부분의 구성이나 전체적인 형상은 어느 정도 공통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덧신에 관한 디자인 창작의 요체는 지배적인 특징을 형성하는 상부 원단, 특히 발가락부와 측면부 원단의 모양(무늬) 및 색상, 이들의 결합 형태(봉제선의 유무 등), 발삽입구 테두리의 형상(착용 시 덧신과 발의 경계를 이루며 발과 어울려 독특한 심미감을 줄 수 있다) 등의 선택 및 새로운 조합을 통해 독특한 미감적 가치를 나타내는가에 있다고 할 것이다.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3은 측면부의 형상과 모양에 큰 차이가 있다. 즉, 선행디자인 3은 발가락부에만 레이스 원단이 배치되고 측면과 배면은 불투명하고 매끈한 원단으로 이루어져 있고 측면부의 발삽입구 테두리가 수평선을 이루고 있어 간결하고 세련된 심미감을 주는 반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발가락부와 측면, 배면이 모두 레이스 원단으로 형성되어 있고 측면부의 발삽입구 테두리 라인이 발뒤꿈치에서 발가락 쪽으로 하향하는 물결의 형태를 이루고 있어 화려하고 장식적인 심미감을 준다.

등록디자인을 측면부에도 레이스 원단을 적용한 선행디자인 1과 4와 대조하여 보더라도, 측면부 발삽입구 테두리 라인은 작은 물결이 수평을 이루며 반복되는 선행디자인 1이나 측면부가 좁고 측면부의

디자인이 두드러지지 않는 선행디자인 4를 선행디자인 3에 결합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미감적 가치를 일으킨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같은 차이점으로 인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 3과 심미감이 상이한바, 이러한 변형을 두고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다 볼 수 없으며,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으로 변경·조합하거나 전용하였음에 불과한 디자인이라 보기 어렵다.

결국 등록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앞서 본 선행디자인들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이라 볼 수 없으므로,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이 정하는 등록무효사유가 없다.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키워드:** 디자인, 등록무효, 창작비용이, 덧버선, 덧신

사건번호	2021허3833	사건명	등록무효(특)
심판번호	2020당1783	심판결과	기각
원고	심판청구인	피고	피심판청구인
권리유형	특허	권리명칭	표면 실장용 도전성 접착 단자
선고일	2022. 6. 29.	선고결과	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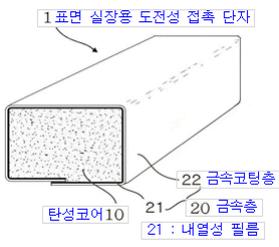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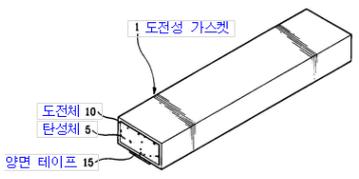
**이 사건 제1, 6, 10항 정정발명은 선행발명의 결합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등록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 **사건 개요**

원고는 2020. 6. 12.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정정 전 제1, 3, 6, 10항 특허발명은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20. 10. 23.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를 정정하는 내용의 이 사건 정정청구를 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원고의 등록무효 심판청구와 피고의 이 사건 정정청구를 2020당1783호로 심리하여, 2021. 5. 4. '① 이 사건 정정청구는 적법하므로 이를 인정하고, ② 이 사건 제1, 6, 10항 정정발명은 비교대상발명 6, 9, 8, 10, 11에 의하더라도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아 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심결(이하 ② 부분 심결을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 **판시 요지**

1)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진보성 부정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	선행발명 1
 <p>표면 실장용 도전성 접착 단자에 있어서, 접착 단자에 탄성을 부여하고 내열 처리된 천연고무 또는 내열성 합성고무로 형성된 탄성 코어; 및, 필름을 기재로 하여 금속 성분이 그 위에 코팅된 구조를 갖는 금속코팅필름으로 상기 탄성 코어의 전체 또는 일부를 감싸도록 하여 형성된 금속층;을 포함하며, 상기 금속층은 내열성 필름, 금속증착층 및 솔더링이 가능하며 1 ~ 20<math>\mu</math>m 두께의 금속코팅층이 순차적으로 적층되고, 상기 내열성 필름은 폴리아미드(PA)와 폴리페닐술페이드(PPS)중에서 선택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면 실장용 도전성 접착 단자.</p>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을 선행발명 1과 대비한 차이점은 다음과 같이 쉽게 극복할 수 있다. ① 표면 실장(SMT)용으로 사용되는 선행발명 2의 EMI 개스킷 어셈블리를 접한 통상의 기술자라면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선행발명 1의 도전성 가스켓을 표면 실장용으로 쉽게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② 선행발명 1의 도전성 가스켓을 표면 실장 기술에 적용할 경우, 통상의 기술자라면 선행발명 1의 탄성체로 사용되는 고무를 선행발명 2에 개시된 리플로우 솔더링 시 고온에 견딜 수 있는 내열성 재료로 쉽게 변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③ 선행발명 1의 도전성 가스켓을 표면 실장 기술(SMT)에 적용하는 경우, 선행발명 13의 도전성 시트를 접한 통상의 기술자라면 선행발명 1의 섬유 시트에 선행발명 13의 금속이 도금된 도전체인 도전성 시트 구성을 별다른 어려움 없이 채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제6항 정정발명은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종속항 발명으로서, "상기 금속층 위에는 금속박층이 더욱 형성된 것"이 부가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데, 부가된 기술적 특징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의 도전체에 선행발명 14의 동판에 관한 구성을 추가하여 쉽게 도출할 수 있다.

3) 이 사건 제10항 정정발명은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과 발명의 종류(카테고리)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이고,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과 동일한 구성을 표현만 달리하여 기재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제

1항 정정발명에서와 같은 이유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제1, 10항 정정발명은 선행발명 1, 2, 13의 결합 또는 선행발명 8, 13의 결합에 의하여, 이 사건 제6항 정정발명은 선행발명 1, 2, 13, 14의 결합 또는 선행발명 8, 13, 14의 결합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키워드:** 특허, 등록무효, 진보성 부정, 표면 실장용 도전성 접착 단자